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승마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승마장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단체입장 기준 조정(안 제2조)

- 당초 : 20명 → 변경 : 10명

나. 단체 통합에 따른 승마단체 정의 변경(안 제2조)

- 당초 : 대한승마협회 및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 가입된 단체
- 변경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8조)

- 당초 : 전염병 → 변경 : 감염병

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삭제(안 제19조)

마. 승마장 휴장일을 명확히 규정(안 제20조)

- 근로자의 날 추가 및 연휴에 관한 사항
- 바.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24조 ~ 제27조의2)
-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
- 사.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현실화, 누락항목 추가
(안 별표 1, 별표 2)
- 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추가 등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 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법」, 「양성평등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육성조련시설(이하 “승마장” 이라 한다)”을 “공동육성조련시설”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마장의”를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자를 말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를 “10명 이상이 인솔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13세”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로,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을 “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승마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다만, 제20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를 “하며,”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을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사용코자”를 “사용하고자”로, “사용기간 및 시간,”을 “사용기간, 사용시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하고자”를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관하는”을 “주관·주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한”을 “위해 주관·주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관하는”을 “주관·주최하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지하여야”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해당 할”을 “해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관리상”을 “시설 관리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위로서”를 “행위로써”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만취된”을 “만취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한다.(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한다)”를 “운영.”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오전9시”를 “오전 9시”로, “운영한다.”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 할”을 “조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지변”을 “시장은 천재지변”으로, “휴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를 “휴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매출 수입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사용 할 때”를 “사용할 때에”로, “당해시설”을 “해당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 받기위해서”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로, “제출하여 시장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로, “갈음한다”를 “갈음할 수 있

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시정지된”을 “일시 정지된”으로,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지 않는다”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행 할”을 “발행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임원”을 “담당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를 “자와”로, “휴대한 자”를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유지관리상”을 “유지 관리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장”을 “사전에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아니 하”를 “아니하”로, “전대 할”을 “전대할”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휴장 일에도 개관”을 “휴장일에도 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월 1일

제20조제1호(중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요일

제20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근로자의 날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22조 중 “승마인구”를 “승마 인구”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을 “구미시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위원은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의원 1명

2. 승마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27조 중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경우에는”으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발매 할”을 “발매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회 하”를 “입회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이용료 및 범위)”를 “(이용료 및 이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용료는 1일 기승자,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 쿠폰제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범위”를 “이용료 및 이용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련 할”을 “조련할”로, “결정 할”을 “결정할”로 한다.

제32조 중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을 “경비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필 조련비 및 마필 대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마필 조련비 및 마필 대여료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마필을 조련하거나 마필을 대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회원 승마장 시설 이용료 할인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단체강습을 신청하는 월회원 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평일	공휴일	
승마장 시설 사용료	200,000	300,000	기준 : 1일당, 8시간
마방 사용료	20,000		기준 : 1일 1두 기준 (사료 및 톱밥 미제공)
마필 조련비	1,200,000		기준 : 1개월 1두 기준 (마방 사용료 포함)
마필 대여료	100,000		기준 : 1일 1두 기준

※ 승마대회시 마방사용료는 대회를 주관·주최하는 측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승마장 시설 이용료(제29조 관련)

이용자 구분	이용료(1명 기준)	이용범위	비 고
1일 기승자	성 인 : 20,000원 청소년 : 15,000원 어린이 : 10,000원	실내, 실외마장 이용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자마 회원	월/50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자마 위탁관리	사료·톱밥만 제공 진료비, 장비비 등 별도, 기승시간 제한 없음
월 회 원 (자마 미보유회원)	성 인 : 300,000원 청소년 : 250,000원 어린이 : 20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쿠폰제 회원 (10장기준)	성 인 : 180,000원 청소년 : 130,000원 어린이 : 80,000원	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	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상해보험 가입
마차체험, 승마체험 (1인당)	성 인 : 5,000원 청소년 : 4,000원 어린이 : 3,000원	승마장 주변	

- 이용시간 : 자마회원을 제외한 기승자는 1일 1시간 이내로 기승시간을 정한다.
- 월 회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 단체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 1일 기승 및 마차 체험 이용료를 50% 할인
 - 월회원(단체강습 포함)은 40% 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 등록장애인(1-3급은 보호자 1명 포함)에게는 50%, 어린이를 동반 기승한 직계가족에게는 20%를 할인 할 수 있다.
-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숲속의 집 객실정원 기준내 사용자에게 한한다)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일 기승 이용료의 50% 감면
 - 마차체험 이용료의 50% 감면
 - 승마체험 이용료의 50% 감면

[별지 제1호서식]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계획	사용시설					
	사용일자 (기간)				사용시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기 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토록함 ○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승마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10mm×297mm[일반용지 60 g /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승마장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분	허 가 사 항			
	당 초		변 경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기 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토록함 ○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승마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10mm×297mm[일반용지 60 g /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승마장 및 <u>공동육성조련시설</u> (이하 “ <u>승마장</u>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동육성조련시설</u> ----- ----- ----- <u>필요</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승마장 시설”이란 <u>승마장의</u>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실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u>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u> (이하 “ <u>승마장</u> ”이라 한다)의 --- ----- --.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u>기타</u> 행위를 말한다.	2. ----- ----- ----- ----- <u>그 밖의</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u>자</u> 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 <u>자</u> 를 말하며----- -----.
6. “단체입장”이란 단체 구성원	6. -----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 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및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 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	10명 이상이 인솔자와 ----- -----. 7. (현행과 같음) 8.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 자를 -----. 9. ----- ----- 말 한다. 10. “승마단체”란 「민법」 제3 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마 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을 말한다. 다만, 제20조의 승 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 -----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 하며, ----- ----- 별지 제3
---	--

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승마장 시설을 사용코자 하
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
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
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
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
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 사용하고자 --

----- 사용기
간, 사용시간 및 -----

-----.

④ ----- 승마장 시설을 이용
하고자 -- 별표 2의 이용료---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2명 -----
-----.
1. -----
주관·주최하는 -----

각종 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5. (생략)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마장 시설의 개
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
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승마
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
니한다.

1. (생략)

2. 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
의 유지 보수 등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나 업체 홍보 등을 위
한 행위로서 승마장 관리에
저해 우려가 인정될 때

4. (생략)

2. -----
위해 주관·주최하는 -----

3. -----
주관·주최하는 -----

4. 5.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

----- 홈페이지 등에 고
지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
----- 해당할 -----

-----.

1. (현행과 같음)

2. 시설 관리상 -----

3. -----
- 행위로서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생략)

제9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단 3월부터 10월까지의는 오후 6시로 한다)
<단서 신설>

2. 공휴일 :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

-----.

1. 감염병-----
-
2. --- 만취한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① -----

----- 다음 -----
-----.

1. -----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
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 ----- 오전 9시-----
----- 운영

② -----

조정할 -----.

③ 시장은 천재지변-----
-----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일반회원, 자

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후단 신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
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
하는 경우 매출 수입액의 100분
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발행은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
트 이내로 하고 매출액에 포함
하지 않는다.(다만, 금액이 기재
되지 않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장 시
설을 사용 할 때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
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생략)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
수) ① -----

-----.

----- 매출 수입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

-- 사용할 때에-----

해당시설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

----- 감면할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생략)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생략)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

자----- 시장에게 제출하여 -----
-----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
전날-----

2. -----
----- 일시
정지된 -----
----- 연장할 -----

3.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15조(입장권) ① -----

발행할 -----.

1. (현행과 같음)

2. -----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 통신 ·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생략)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
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의 입장권 금액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
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2. (생략)

3.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생략)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
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
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
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 담당 임원-----

3. (현행과 같음)

4. ----- 자
와 -----
----- 휴대한 65세 이
상의 자

② 제1항 본문-----
-----.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

2. (현행과 같음)

3. ----- 유지 관리상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 사전에 시
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승마장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④ (생략)

제20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 허가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 포함)

<신 설>

2. 매주 월요일

<신 설>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후단 삭제>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 아니
하-----
-- 전대할 -----.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휴장일) -----
-----.

휴장일에도 개장-----.

<삭 제>

2. 1월 1일

1. 월요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
마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시
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제24조에
따른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
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공
무원으로 한다.

7. (현행 제3호와 같음)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근로자의 날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
체공휴일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승마 인구 -----

----- 지원할 -----
--.

제24조(위원회 설치) -----

----- 구미시 승마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
소장이 되고, 위원은 승마장 시
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과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

③ 당연직 위원은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미시의회의원 1명
2. 승마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위원회 기능) 승마장관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의원 1명
2. 승마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제2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7조(실비보상)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27조(실비보상) 위원회 -----

경우에는 -----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다만, 공무원인 위

<신 설>

제28조(매표 및 검인) ① (생 략)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
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 할 경우에
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 입회 하
에 사용자(주최 측)가 한다.

제29조(이용료 및 범위) ① 승마
장 시설의 이용료는 1일 기승
자,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
반회원(마필 미보유자), 쿠폰제
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범위
는 별표 2와 같다.

② 축산농가의 마필을 위탁 조
련 할 경우와 학교 승마교육(정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발매할 -----
-----.

③ -----
----- 입회하-----
-----.

제29조(이용료 및 이용범위) ① -
----- 이용료 및 이용범위-----

-----.

② ----- 조련
할 -----

규과목 및 특별활동), 장애인 재 활승마, 기업체 직원 교육 등으 로 이용 시 시장과 별도의 계 약을 통해 이용료를 <u>결정</u> 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시장은 위탁한 승마 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u>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u> 제33조(준용) <u>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u> <u>를 준용한다.</u>	----- ----- ----- ----- <u>결정할</u> --- --. 제32조(지원) ----- ----- <u>경비를 예산의 범위</u>----- -----. 제33조(준용) <u>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 리 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 한다.</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20. 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생략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승마장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의 단체입장에 대한 이용료 감면
(안 제2조, 제2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단체입장에 대한 할인금액은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감소액(2016년 기준)

계획) 단체입장(10명 이상 19명 이하)

$$20,000\text{원} \times 350\text{명} = 7,000,000\text{원}$$

조정) 단체입장(10명 이상 19명 이하)

$$20,000\text{원} \times 350\text{명} \times 50/100 = 3,500,000\text{원}$$

$$\text{감면) 계획}(7,000,000\text{원}) - \text{조정}(3,500,000\text{원}) = 3,500,000\text{원}$$

4. 작성자

- 유통축산과 담당주무관 권용기(054-480-5833)

소관 실·과		유통축산과
입 안 자	과 장	장상봉
	담 당	손이석
	담 당 자	권용기 (480-5833)